
2024~2026 대규모 통계조사업무 유공 유공자 및 유공기관 포상계획(안)

2026. 7.



I

추진배경

- ☐ 대규모 통계조사* 성공적 수행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로에 대한 포상 실시
 - *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2025 인구주택총조사, 2025 농림어업총조사, 2026 경제총조사
- ☐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대한 사기진작 및 격려
- ☐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와 향후 대규모 통계조사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협조 기반 확립

II

기본방향

- ☐ 정부 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및 공정한 심사·선발
 - 대규모 통계조사(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공헌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대한 포상 확대 필요
 - 기존 관례에 따른 포상이 아닌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 및 포상 심사로 포상 적격자* 선발
 - *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 문화 실천

III

포상계획(안)

1. 포상대상 및 선정기준

- ☐ 선정 대상
 - 대규모 통계조사(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공헌한 유공자 및 유공 기관 대상 포상
 - (유공자) 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에 공헌한 공무원, 총조사 조사요원, 콜센터·홍보·행정자료 제공 등 총조사 관련업무를 수행한 민간
 - (유공기관) 국가데이터처 등 총조사 수행 국가기관, 지방정부, 콜센터·홍보·행정자료 제공 등 총조사 관련업무를 수행한 기관
- ☐ 포상 규모 : ○점*(훈장, 포장,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처장})
 - *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협의를 통해 확정예정

2. 포상 기준(자격 및 기간)

※정부포상 세부사항은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을 따름

☐ 자격요건

-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2025 인구주택총조사, 2025 농림어업총조사와 2026 경제총조사에 참여한 자로 통계업무에 공로가 크며, 상훈법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수공기간(공적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처장표창 2년 이상

☐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추천권자(기관장)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 3년)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 표창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모범공무원 포함)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포상 추천 제한

□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인 완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중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중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중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중화운동 관련자가 민중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 추천일 이전 체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2) 형사처분
-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기관)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4. 포상대상자 선정

☐ 제한사항 확인

-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기준

- 공적사항, 수공기간, 활동분야의 전문성 및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 여부 및 훈격을 결정
 - 개인: 공적사항, 직위, 수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단체: 업무추진실적 및 업무기여도 등을 검토

☐ 공개검증

- 정부포상 후보자는 명단·공적 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 예정
 - 국가데이터처에서 정부포상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 공적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 의견수렴 예정
 - 국가데이터처에서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개 검증 실시 개요, 개진된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을 행정안전부로 제출

☐ 공적심사

- 상훈법령상 추천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적심사를 실시
- 적격자를 대상으로 총조사별 세부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자료를 기초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정부포상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은 재정경제부에서 최종 결정

5. 추천시 유의사항

- ☐ 추천 기관 및 인원은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1~2개업체, 개인은 10명 이내로 추천 (업무 실적에 따라 포상 규모 결정)
- ☐ 인구주택·농림어업·경제총조사 업무에 대한 공적을 면밀히 검토 하여 추천
-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대상자에 대한 포상 추천을 철회
- ☐ 공적에 관하여 조사실시기관 등에서 심사를 하여 추천 하였더라도 국가데이터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재심사 실시 예정
- ☐ 추천순위에 따라 포상 훈격이 결정되므로 선정 시 신중 요망
 - 추천 대상 모두가 반드시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
- ☐ 공적조서 작성시 최근 공적내용을 중심으로 공적요지는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공적내용은 정부포상대상자는 반드시 글자 수 2,000자 이상 작성하여야 함
 - ※ 재정경제부 장관 및 국가데이터처 표창은 글자 수 500자 이상

VII

제출서류 :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 선발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26. 8. 6.(목)까지 제출
(서식 참조, 기일 엄수)

구비서류	유의사항	비고
추천대상자 현황	○ 후보대상자에 대한 요약정보(한글파일, 스캔파일 각1부씩)	붙임1
추천서	○ 한글파일 제출	붙임2
공적요지	○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 개인, 유공기관으로 구분 ○ 포상분야별, 개인/단체별로 작성하되, 공적개요를 1/2이상 요약(한글)	붙임3
정부포상 및 장관·처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포상 결정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활용 ○ 개인만 제출 ○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 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원본(스캔) 제출	붙임4-1,2 (정부포상) 붙임4-3 (장관포상) 붙임4-4 (처장포상)
공적조서 (개인, 단체)	○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최소한 A4용지 2매 이상으로 작성 (공적조서 내 표·사진 사용금지, 필요 시 별도 제출) * 정부포상은 공적조서 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그 외 장관·처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정부포상 또는 생년월일 장관·처장 필히 확인한 후 제출 ○ '조사자와 추천관'란 기재 및 직인 날인(한글파일, 스캔파일 각 1부씩)	개인: 붙임5 단체: 붙임6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 공무원만 해당 ○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스캔) 제출	붙임7
경력증명서	○ 비공무원만 해당 작성자 날인된 원본(스캔) 제출	붙임8
공통사항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유사경력기간은 공적기간에서 제외 ○ 첨부서류 제출 시 직인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면은 스캔해서 제출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 제출 시 5매 이내제출(공적조서 내 첨부금지) ○ 파일명은 양식별로 별도의 파일로 분할하여 제출 ○ 추천대상자 자현황·공적조서 한글파일 PDF파일 각1부씩, 공적요지 한글파일 1부, 동의서는 서명후 PDF파일 1부	

<붙임1> 추천자 현황

정부포상 및 장관/처장 표창 추천대상자 현황

가. 유공자(공무원, 조사요원, 관련 민간)

추천 순위	소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성별	생년 월일	수공 (공적) 기간	주 소	연락처	① 징 계/ 기서훈	② 물 의 야 기 (일시· 내용)
1	(주) ○○	과장	홍길순 (洪吉順)	여	800111	20년1월 13일	대전 유성구 000로 125 ○○APT 000동 000호	010-0000-0 000		
2										

나. 유공기관

○ 지방정부 및 국가기관

추천 순위	기관명	주 소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① 징 계/ 기서훈	② 물 의 야 기 (일시·내용)
1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시청)	정00	042) 471-0000		
2						

○ 관련 기관

추천 순위	기관명	대표자	주 소	기관 실무자 연락처	① 징 계/ 기서훈	② 물 의 야 기 (일시·내용)
1	(주) ○○	정00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시청)	042) 471-0000		
2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작성자 (직위)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총무·인사과장 (직급) (성명) (서명)

<붙임2> 후보자 추천서

「2024-2026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직업)	
	전화*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현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 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천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붙임3> 개인 및 기관(단체)용

정부포상 및 장관/처장 표창 후보자 공적요지(유공자)

□ 포상명: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연번	소속 직위 (수공기간)	성명 (생년월일)	공 적 내 용 (1/2페이지 정도)	수상경력
1	(주) ○○○○ (16년1월)	홍길동 (1970.0.0.)	(양식) ■ - ■ - [작성요령] ■ 개조식으로 핵심 공적 위주, 수치화하여 작성 ■ 추상적 단어는 가급적 자제 ■ 개인의 성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 위주로 작성 ■ 공적개요는 1/2페이지 이상 작성(양식 변경불가)	대통령표창 (‘12.12.31.)
2				

정부포상 및 장관/처장 표창 후보자 공적요지(유공기관)

□ 포상명: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연번	기관명	대표자명 (수공기간)	공 적 내 용 (1/2페이지 정도)	수상경력
1	(주)홍길동	대표자명 (16년 1월)	(양식) ■ - ■ - [작성요령] ■ 개조식으로 핵심 공적 위주, 수치화하여 작성 ■ 추상적 단어는 가급적 자제 ■ 성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 위주로 작성 ■ 공적개요는 1/2페이지 이상 작성(양식 변경불가)	공란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2024-2026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붙임4-2》 동의서-2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가데이터처(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영구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1년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10조	영구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2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제공근거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기록부: 영구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붙임4-3》 동의서-장관포상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2024-2026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성명			
소속(주소)	※ 도로명주소로 기입	직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며, 만약 공적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소속

성명

(서명)

《붙임4-4》 동의서-국가데이터처장 포상

국가데이터처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국가데이터처장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2024-2026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성명			
소속(주소)	※ 도로명주소로 기입	직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국가데이터처장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며, 만약 공적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국가데이터처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소속

성명

(서명)

《붙임5》 개인

공 적 조 서(개인)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정부포상 후보자는 주민등록번호 장관 및 처장 표창 후보자는 생년월일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직업		소속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사업자등록증상 표기명)
직위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예) 책임연구원, 정교수 등	직급·계급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추천 훈격(勳格)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처장표창 택1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	○년 ○월 (예)23년5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예) 상기 본인은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는 등 ~~ 정부혁신 성과창출에 크게 기여함.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 가능) * 글자 수를 맞추지 않을 경우 추후 상훈시스템 내 등록 불가하므로 반드시 띄어쓰기 포함 60자 이상 ~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그림, 도표 포함 금지 * (공적기간) 해당 공적과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포상추천일 기준으로 최초연월일부터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조사자			
소속	최종 취합하여 국가데이터처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명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공적기간’의 경우 기본적인 포상요건(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확인 - 공적관련 전체 기간을 합산하되 추천일을 기준으로 일 단위까지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의 경우 상훈법령의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월일과 포상명을 정확히 기재 -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 서술식으로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문장 중간에 줄바꾸기(enter) 금지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불가, 그림, 표, 서식 등 제외 * 글자 수를 맞추지 않을 경우 추후 상훈시스템 내 등록 불가하므로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할 것 (2,000자 미만일 경우 보완 요청 예정) * 장관 및 처장 표창 후보자는 500자 이상 작성 * 그림, 도표 포함 금지	

《붙임6》 단체 용(기관)

공 적 조 서(단체, 기관)

(앞 쪽)

성명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사업자등록증상 표기명)		
법인번호	13 자리	사업자번호	10 자리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대표자성명			
추천 훈격(勳格)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처장표창 택1	공적기간 *	○년 ○월 (예)23년5월
추천 순위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6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하며, '~에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글자 수를 맞추지 않을 경우 추후 상훈시스템 내 등록 불가하므로 반드시 띄어쓰기 포함 60자 이상 ~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그림, 도표 포함 금지 * (공적기간) 해당 공적과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포상추천일 기준으로 최초연월일부터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조사자			
소속	최종 취합하여 국가데이터처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X) ○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 정부포상 추천자의 경우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2,000자 이하는 상훈 시스템에 입력 불가) 단) 장관.처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그림, 도표 포함 금지	

《붙임7》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년 월 일)		
8) 일 반 직	~ (년 월)		13)교 원	~ (년 월 일)		
9) 별 정 직	~ (년 월)		14)군 인	~ (년 월 일)		
10)기 능 직	~ (년 월)		15)군 무 원	~ (년 월 일)		
11)고 용 직	~ (년 월)		16)기타()	~ (년 월 일)		
합 계 ㉔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㉕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㉔-㉕)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붙임8》 경력증명서(비공무원)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채용내역	채용 기간	채용 분야			채용 직종	
	~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관리자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지원관리자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원	
	~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용도		기관제출용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 (서명)						